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65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김용태 · 이종배 · 조정훈
박충권 · 박준태 · 정성국
서천호 · 이성권 · 김대식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정량적 통계수치만을 활용하는 산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이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사기지 등의 인접지역은 규제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주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기반 시설 소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특정한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 ② (생 략)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 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 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 정(補正)하여야 한다.	③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지 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u>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